

1. 사건개요

- 사 건: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의 위헌확인심판청구
- 청 구 인: 전명선 외 19명
-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2.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로서 제한되는 기본권

- 희생자들의 유가족으로서 갖는 **신원권\***

**\*신원권:**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행복추구권’ 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실현에 있어 필수적 전제조건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89나50586 판결(故 박종철 민사열사 관련 판결)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통과 영욕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하나의 권리로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 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 희생자들의 유가족으로서 갖는 **진실을 알 권리**와 국민으로서 갖는 **알 권리**
- **평등권**

3. 헌법위반 관련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1)). 따라서,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 대통령기록물법 정의규정(제2조)에서 ‘대통령’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하는 권한의 주체에 대통령권한대행이 포함될 수 없다. 포함시키는 것은 명시적 규정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그 핵심이고, 부차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일정한 보호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는 세월호참사 사건과 같은 국가존립의 근거를 상실케 하는 위법행위의 은폐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미국의 닉슨 탄핵사건에서 대통령 기록물인 백악관 녹음테이프를 빼돌리려고 하자, 미국 의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기관이 기록물을 몰수해서 심의했고, 그 공개여부를 결정했다.
-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하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도 없다.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에게만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법 자체의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이다.
- 반면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로 인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인 청구인들은 유가족으로서 갖는 신원권과 진실을 알 권리 및 국민으로서 갖는 알 권리는 전면적으로 박탈되었다.
-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은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지정행위를 유보하고 대통령기록물개정행위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였지만,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를 강행하였다.
- 따라서,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낮고, 세월호 유가족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며,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할 뿐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1)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평등원칙 위반

-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은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검증되어야할 기록물이기 때문에 통상의 지정기록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오히려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보호기간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